

일본 산업재생법과 국내 시사점

김 용 춘*

목 차

- | | |
|-----------------|---------------------------------|
| I. 서설 | Ⅲ. 산업재생법 특례의 일반화(신회사법에
의 반영) |
| Ⅱ. 산업재생법의 주요 내용 | 1. 신회사법의 제정과 산업재생법의 개정 |
| 1. 산업재생법 개요 | 2. 신회사법에의 반영내용 |
| 2. 적용대상 | Ⅳ.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에의 시사점 |
| 3. 지원조치 | |

I. 서설

일본에서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 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산업재생법’이라 한다.)¹⁾이 제정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는 일본 산업계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만큼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갇혀있을 때이다. 1989년과 1999년 사이 GDP는 겨우 25%, 소비는 20%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률은 2배나 증가하고 주가지수는 약 절반수준으로 폭락하였을 정도이다.²⁾ 이와 같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정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 기업정책팀 선임조사역

1) 1999년 제정당시 법명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이었으나, 2009년 4월 동법의 명칭을 개정하였다.

2) 한국경제연구원,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2000), 9-10쪽 참조; 정성춘 외,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2), 40쪽 참조.

〈표1〉 일본 장기 불황기 정책방향³⁾

기간	역대수상	장기불황 정책방향
1991.11	미야자와(宮澤喜一)	재정지출 확대 통한 경기부양책
1993. 8	호소카와(細川護熙)	재정지출 확대 통한 경기부양책
1994. 4	하타(羽田孜)	재정지출 확대 통한 경기부양책
1994. 6	무라야마(村山富一)	재정확대, 규제개혁 시작
1996. 1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재정개혁 추진(소비세 인상)
1998. 7	오부치(小渕惠三)	금융위기 대응 위해 공적자금 투입, 산업재생법 도입, 0% 금리정책 실시
2000. 4	모리(森喜朗)	IT경기부양 주력
2001. 4	고이즈미(小泉純一郎)	구조조정 강화, 은행부실채권 처리촉진, 민영화

그러나 전통적인 케인즈 정책에 입각한 총수요 확대정책, 즉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⁴⁾한 반면 장기불황 탈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본·노동 등의 경영자원이 성숙산업분야에만 집중되고 이것이 신성장분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산업전반의 과잉설비로 인한 생산성 악화가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1990년대 말 오부치 정권부터 정책방향을 재정지출 확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이것을 법제도화 한 것이 바로 1999년 산업재생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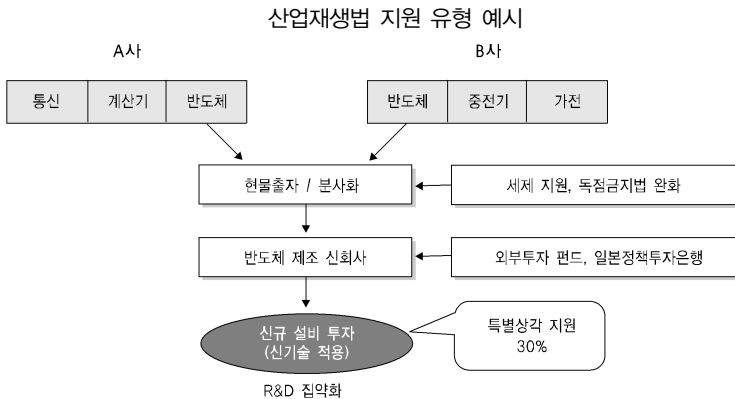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당시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률로 구조전환법, 사업혁신법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전환법은 가동률이 낮은 19개 업종 내지 설비만을, 사업혁신법은 생산·고용사정이 악화되

3) 이지평, 일본의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시사점(LG경제연구원, 2004. 10), 2쪽.

4)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한일간 유사점과 대책)(2009. 7) 참조; 1990년 9조 2천억 엔에서 1999년 41조 8천억 엔으로 4.5배 이상 확대되었다.

고 있는 209개 업종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들 법률에서 지원하는 구조조정은 기업조직 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선에서 그치는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⁵⁾

이에 비해 산업재생법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정상기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⁶⁾

이하에서는 산업재생법의 주요한 적용요건 및 지원조치, 적용사례와 효과, 최근(2009년 6월) 개정법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5) 유관영, 일본의 기업구조개혁 지원책과 시사점(산업연구원, 1999. 12), 9-11쪽 참조.

6) 이지평, 일본의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시사점(LG경제연구원, 2004. 10), 8쪽에서 재인용.

Ⅱ. 산업재생법의 주요 내용⁷⁾

1. 산업재생법 개요

1.1. 산업재생법 제·개정 경과

산업재생법은 1999년 제정당시 2003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산업재생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은 단시간 내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수행하게 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과 생산성을 조속히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일본기업의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90년대 장기불황 과정에서 진행된 일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다소 완화되어 일본으로의 공장 회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산업재생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자 동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 및 적용범위, 지원조치를 점차 확대하였다. 1999년 제정당시에는 사업재구축계획(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구조조정계획’⁸⁾)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것을 2003년에는 후술하는 경영자원 재활용계획이나 공동사업재편계획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7년 개정시에는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파격적으로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업재생법의 적용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일부 지원조치들은 2005년 신회사법 제정시 상당수 반영되어 모든 회사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일반법화 하였다.

최근 2009년에는 자원가격의 불안정화 및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된 지원조치로서 업자의 자원 생산성의 향상(설비 투

7) 이 부분은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산업재생법 해설서(平成21年改正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 計画認定ハンドブック)를 주로 참고하였다. 여기서는 산업재생법상 주요한 것만 논하기로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계획이나 지원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8) 권중호,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세미나 자료(한국법제연구원, 2008. 8), 69쪽.

자의 100%특별상가), 사업자의 자금 조달의 지원 강화(중소 방직업 기반 정비 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주식회사 산업 혁신 기구의 창설, 중소기업의 사업 재생 지원의 강화(중소기업 승계 사업 재생 계획)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동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표2〉 일본 산업재생법 개정 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99.10	•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제정, ‘사업재구축 계획’ 도입 • 적용기한 2003.3 限
2003. 4	•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등 지원대상 확대 • 상법의 특례 등 특별조치 확대 • 적용기한 연장(2003.3 → 2008.3)
(2005.7)	• 신회사법에 합병 대가 유연화 등 일부 특례 규정 반영
2007. 8	• ‘기술활용사업혁신계획’, ‘경영자원합병계획’ 등 지원대상 확대 • 적용기한 연장(2008.3 → 2016.3)
2009. 6	• 에너지 절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투자 지원 등 확대 •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강화(사업분할시 중소기업의 인허가 승계 허용 등) • 사업혁신기구 창설(기업과 대학에 사장되어 있는 첨단기술이나 특허를 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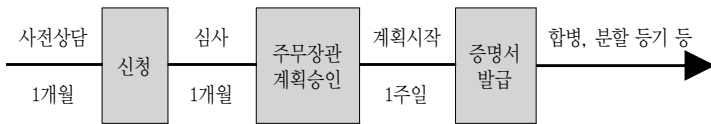
1.2. 적용절차

산업재생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⁹⁾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요건인 사업재구축, 경영자원재활용 등 산업재생법상 계획은 3년 이내 실행완료 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적용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요다자동차, 신일본제

9) 주무담당 부서는 경제산업성(제조업, 유통, 소매업 등), 금융청(금융기관 등), 총무성(통신, 방송업 등), 후생노동성(의약품제조업 등), 농림수산성(식품산업 등), 국토교통성(건설업, 운수업 등) 등임, 2009. 3. 27까지 산업재생법의 승인을 받은 492건 중 320건(65%)이 경제산업성 소관.

철, 소니, 산요, 닛산, 스미토모 금속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도 산업재생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¹⁰⁾

〈그림1〉 산업재생법 인정 흐름도



만일 사업재구축 계획 종료 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에도 산업재생법상 각종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전혀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계획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소된다. 즉 산업재생법은 사후적으로 생산성 향상 등 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 사업재구축 등의 계획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그 계획에 따라 성과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사전관리 중심). 따라서 기업이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생법상 지원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다만 승인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무관청의 일정한 감독¹¹⁾을 받아야 한다.

10) LG주간경제,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배운다(2004. 11), 9-1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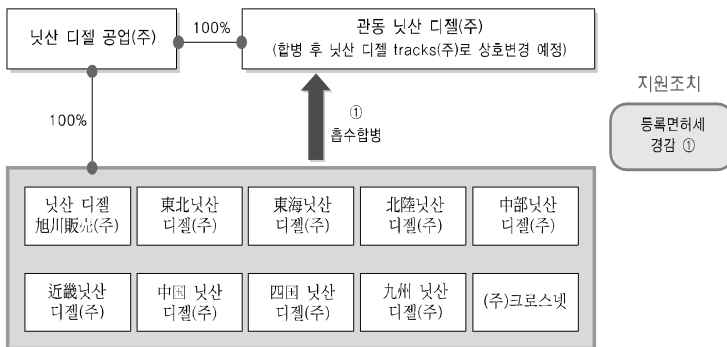
11) 산업재생법상 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해 주무장관에게 원칙적으로 연1회 이상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산업재생법 제83조 참조).

2. 적용대상

2.1. 사업재구축 계획

사업재구축 계획이란 핵심사업(중핵적 사업)에 기업의 경영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 즉 ‘선택과 집중’을 키워드로 하는 것으로써 그룹 내에서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생법상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동법 제정시(1999년)에는 동계획만 인정되었었다. 핵심사업은 현행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인 사업도 포함한다.

〈그림2〉 사업재구축 계획 사례(닛산(日産), 2009.1)



사업재구축 계획은 기업단위로 달성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 재무건전성 제고, 사업혁신, 고용에 대한 배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사업을 행하지 않는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재구축 계획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 사업재구축 계획 인정기준

구 분	요 건
① 생산성 향상 (택 1)	-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ROE) 2% 포인트 이상 향상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5% 이상 향상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6% 이상 향상
② 재무건전성 제고 (모두 충족)	- 유이자 부채총액 / CF(cash flow) $\leq$ 10배 - 경상수입 $\geq$ 경상지출
③ 고용에 대한 배려 (모두 충족)	- 계획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 종업원 수의 추이에 대한 기재 - 파견(出向)·고용승계(轉籍)·해고의 내역 기재
④ 사업의 구조변경 (택 1)	- 합병,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사업 혹은 자산의 양수, 타사 주식의 취득, 증자, 회사의 설립에 의한 핵심 사업의 개시, 확대 또는 능률의 향상 - 시설의 철거, 설비의 폐기, 분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사업 혹은 자산의 양도, 관계 사업자 주식의 양도, 회사의 설립, 청산에 의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⑤ 사업혁신 (택 1)	- 신상품, 신서비스 매출 $\geq$ 매출액의 1% - 제조원가, 판매비 절감률 $\geq$ 5% - 매출액 신장률 $\geq$ 업계평균 매출액 신장률 + 5%

사업재구축 계획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일본 철강업체 3~4위권인 스미토모 금속이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172억 엔의 증자 등을 추진하여, 제조원가 6% 절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133%나 향상 시킨 경우¹²⁾가 있다. 또한 신일본제철의 자회사인 신일철 화학도 동 계획을 활용하여 핵심 사업인 2개 신제품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의 약 7%까지 신장,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78.6%나 향상시켰으며¹³⁾, 가전업체인 삼요전기(三洋電機)는 핵심 사업인 4개 신제품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의 약 3.3%까지 신장,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을 59.8%까지 향상시킨 바가 있다¹⁴⁾.

12) 일본 경제산업성, 2003년 5월 30일에 계획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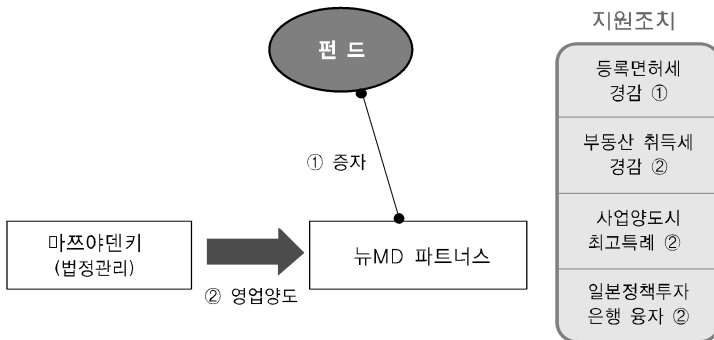
13) 일본 경제산업성, 2003년 7월 22일에 계획 승인.

14) 일본 경제산업성, 2006년 3월 10일에 계획 승인.

2.2.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이란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그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합병, 사업의 양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정사업을 인수(승계)하여 당해 ‘특정사업’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사업재구축 계획과 달리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승계)하는 것이 주된 요소이다.

〈그림3〉 경영자원 재활용 계획 사례(뉴MD, 2003.11)



동 계획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대부분 사업재구축 계획과 동일하나, 경영재활용 계획은 기업단위가 아니라 사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의 목표에 대해서는 ROE 대신 수정 ROA(Cash Flow / 자산)¹⁵⁾으로 계측하게 된다. 또한 승계하는 사업에

15) ‘수정 ROA(CF(Cash Flow)/자산) $\geq 2\%$ ’ 요건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종료 후의 총자산감가상각비전 영업이익률 - 개시 전의 총자산감가상각비전 영업이익률 ≥ 2
- 종료 후의 총자산연구개발비전 영업이익률 - 개시 전의 총자산연구개발비전 영업

주목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신설회사도 신청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을 양도하는 측이 청산 또는 회생절차 중의 기업이어도 무방하다.

〈표4〉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인정기준

구 분	요 건
① 생산성 향상 (택 1)	- 수정 ROA(CF/자산) 2% 포인트 이상 향상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5% 이상 향상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6% 이상 향상
② 재무건전성 제고 (모두 충족)	- 유이자 부채총액 / CF(cash flow) $\leq$ 10배 - 경상수입 $\geq$ 경상지출
③ 고용에 대한 배려 (모두 충족)	- 계획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 종업원 수의 추이에 대한 기재 - 파견(出向)·고용승계(轉籍)·해고의 내역 기재
④ 다른 사업자 사업의 승계 (택 1)	- 합병 - 사업의 양수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것
⑤ 사업혁신 (택 1)	- 신상품, 신서비스 매출 $\geq$ 매출액의 1% - 제조원가, 판매비 절감률 $\geq$ 5% - 매출액 신장률 $\geq$ 업계평균 매출액 신장률 + 5%

※ ■■■■ 음영은 사업재구축 계획과의 차이점

동 계획을 인정한 사례로는 소창흥산(小倉興産)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여 판매비 8.7% 절감,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을 29.2% 향상시킨 바가 있으며¹⁶⁾, 후쿠스케(福助)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영업양수 등을 통해 신상품 판매에 성공하여 신상품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의 6.4%까지 신장,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5.3% 향상시킨 경우가 있다.¹⁷⁾

이익률 $\geq$ 2

- 종료 후의 총자산감가상각비전 연구개발비전 영업이익률 - 개시 전의 총자산감가상각비전 연구개발비전 영업이익률 $\geq$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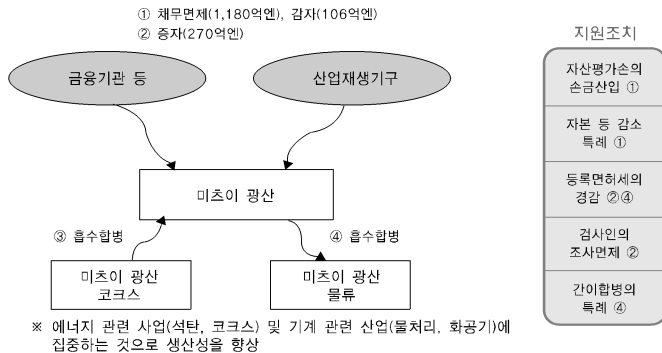
16) 일본 경제산업성, 2003년 5월 30일에 계획승인.

17) 일본 경제산업성, 2003년 9월 29일에 계획승인.

2.3. 채무면제 계획¹⁸⁾

상기 2계획(사업재구축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에 따른 사업재편의 경우 채무면제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업재생법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혜택이 확실하게 사업재구축 등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2계획에 따른 요건 외에 채무건전화 목표에 대한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의 보고서, 재건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보고서, 채권자와 채무면제에 대한 합의서면 등 추가적인 서류제출¹⁹⁾이 요구된다.

〈그림4〉 채무면제 계획 사례(미츠이 광산, 2003.9)²⁰⁾



18) 일본에서는 ‘채권방기를 포함한 2계획(債権放棄を含む2計画)’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9) < 신청하는 시점에서 필요서류 >

- 채무건전화 목표에 대한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의 보고서
- 채권자와 채권방기에 대한 합의서면
- 감자 등 주주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을 표명하는 서면
- 소위 재건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보고서

< 계획인정 후 필요서류 >

- 채무면제 합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결산을 한 후의 재산목록
- 자산의 평가환을 반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반기마다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사반기마다 매상추이표와 유이자채무잔고의 추이표

20) 동 사례는 사업재구축 계획과 함께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이다.

동 계획을 인정한 사례로 동북지열(東北地熱) 에너지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감자와 증자 추진, 다른 사업자로부터 합병을 단행하여 원가 20% 감소, 영업이익률을 2.5% 향상시킨 바가 있으며²¹⁾, 후지유업(富士油業)은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감자 등을 추진하여 판매비 5.98% 감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20.6% 향상시킨 바가 있다²²⁾.

2.4. 경영자원융합 계획

경영자원융합 계획이란 다른 사업 분야에 속하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융합(JV 등)하여 혁신적인 사업을 실시해 현저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²³⁾을 말한다. 이는 2007년 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계획으로 2 이상의 신청자(다른 분야의 기업)가 JV를 설립하고 각각의 경영자원(기술, 인재, 노하우 등)을 일체로 활용하여 신제품의 개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례가 전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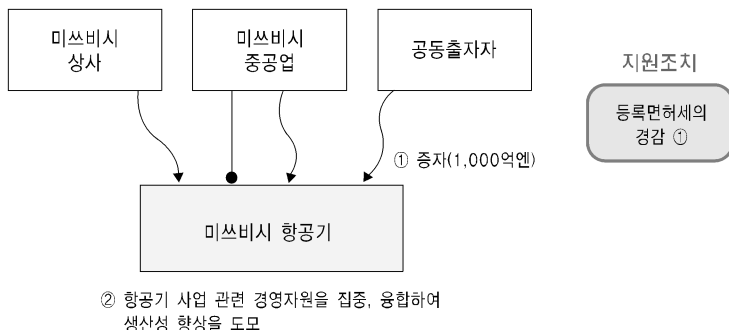
21) 일본 경제산업성, 2003년 9월 11일에 계획 승인.

22) 일본 경제산업성, 2004년 2월 9일에 계획 승인.

23) 일본 산업재생법 제2조 제6항 이 법률에 있어서 ‘경영자원 융합’이란, 그 행하는 사업의 분야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조합하여 일체적으로 활용하고, 현저하게 높은 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다음 각호에서 열거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2 이상의 사업자 및 그 관계사업자에 관계된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사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양수,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당해 취득에 의해 당해 다른 회사가 관계사업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의 상당 정도의 증가 또는 회사의 설립을 수반하는 것일 것
2. 신상품의 개발 및 생산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의해 생산이나 판매에 관한 상품의 구성이나 제공에 관한 서비스의 구성을 상당 정도 변화시키거나, 또는 국내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를 상당 정도 개척하는 것일 것

〈그림5〉 경영자원융합 계획 사례(미쓰비시, 2008.3)



동 계획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 재무의 건전화, 사업 혁신, 고용에의 배려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리스크가 높은 다른 분야 기업간 제휴에 의한 이노베이션, 그것에 의한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특별상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조치가 위의 계획들보다 확대되는 것이므로 인정 기준은 사업재구축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의 경우보다 다소 엄격하다. 동 계획은 성격상 2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표5〉 경영자원융합 계획 인정기준

구 분	요 건
① 생산성 향상 (택 1)	- 수정 ROA(CF/자산) 3% 포인트 이상 향상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10% 이상 향상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12% 이상 향상
② 재무건전성 제고 (모두 충족)	- 유이자 부채총액 / CF(cash flow) ≤ 10배 - 경상수입 $\geq$ 경상지출
③ 고용에 대한 배려 (모두 충족)	- 계획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 종업원 수의 추이에 대한 기재 - 파견(出向)·고용승계(轉籍)·해고의 내역 기재

구 분	요 건
④ 경영자원의 융합 (택 1)	<2이상의 사업자의 사업분야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한다> - 합병 - 분할 - 주식교환 - 주식이전 - 사업 또는 자산 양수 - 다른 회사 주식 취득 - 증자 - 신회사 설립
⑤ 사업혁신 (택 1)	- 신상품, 신서비스 매출 $\geq$ 매출액의 1% - 매출액 신장률 $\geq$ 업계평균 매출액 신장률 + 5%

※ ■■■음영은 사업재구축 계획과의 차이점

동 계획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는 상기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유일하며, 동 계획의 실행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아 달성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동 사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및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기타 다수의 출자기업은 차세대 소형 여객기 「MRJ(Mitsubishi Regional Jet)」의 개발, 판매, 부품 조달, 애프터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사업회사 「미쓰비시 항공기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공동출자를 추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출자 하는 이유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조기술, 미쓰비시상사의 판매 노하우 등 각사가 가지는 경영자원을 융합시켜 제조·판매 일체가 된 사업 체제를 구축하여, MRJ를 포함한 항공기 사업 전반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 및 혁신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이다.²⁴⁾

2.5. 사업혁신설비도입 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 계획은 설비를 최초로 도입하거나 자신의 연구개

24) 일본 경제산업성 2008년 3월 31일 보도자료(三菱重工業株式会社及び三菱商事株式会社の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に基づく経営資源融合計画の認定について) 참조.

발 성과인 신기술을 이용한 설비(사업혁신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 내에서 당해 설비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다만 다른 계획과 달리 사업혁신설비 도입계획은 설비투자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승인 신청은 투자설비의 내용만 기재하며, 지원조치도 특별상각의 특례(20~25%) 등 일부에 한정된다. 아울러 동 계획은 다른 계획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설비투자의 특별상각만을 받고자 한다면 동 계획만 인정받으면 되고, 산업재생법상 다른 계획들의 내용으로 사업혁신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⁵⁾

사업혁신설비 도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비의 제1호(필수설비)로서의 요건, 규모 요건 등 설비의 내용에 관한 요건 등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표6〉 사업혁신설비 도입계획 인정기준

구 분	요 건
① 연구개발과 유기적 관련성	- 사업자가 사내에 연구개발부문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가 행한 연구개발의 성과(공동연구 등에 의한 성과를 포함)가 당해 투자설비에 현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함(공표논문, 특허, 저작권, 노하우 등에 의해 확인)
② 설비의 혁신성	- 당해 설비에서 생산된 상품(서비스)이 신상품(신서비스)이거나, 당해 설비의 도입에 의해 종래 상품의 생산(서비스의 제공)의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기업의 종래설비에 비하여 40% 이상 향상)되어야 함
③ 설비의 제1호성	- 당해 사업자에 있어 제1호 설비로서 당해 설비투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노무의 제공을 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새로운 기계 및 장치
④ 설비의 규모	- 기계 및 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10억 엔 이상이어야 함
⑤ 과잉공급구조 촉진금지(일반사업 혁신설비)	- 동등한 설비를 도입한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잉공급구조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핵심 기술(특정사업 혁신설비)	- 동등한 설비를 도입한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핵심 기술로서 일본 및 시장국에서 특허권이 있거나,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

※ ①~⑤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일반 사업혁신설비, ①~④+⑥의 요건을 갖춘 것을 특정 사업혁신설비라 함

동 계획 인정 사례로 제4세대 액정 디스플레이(LCD, 680 × 880mm)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던 샤프 주식회사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6세대 LCD 생산라인(1,500 × 1,800mm) 설비를 구축하면서 2003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것 등이 있다. 다만 동 계획은 생산성, 재무건전성 제고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달성 성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2.6. 자원생산성혁신 계획²⁶⁾ 도입

자원생산성혁신 계획은 2009년 6월 개정시 새로 신설된 유형이다. 동 계획은 세계적인 자원가격의 불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또는 영업장의 자원생산성(부가가치/에너지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영업장 단위에서 3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구조의 변경, 사업설비의 도입, 기존설비의 운전최적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7>의 기준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소(연간의 에너지 사용량이 원유 환산 3,000kl 이상)나, 복수 사업자에 의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26) 이에 대한 상세는 일본 경제산업성 2009년 4월 개정안 설명자료(我が国における産業活動の革新等を図るための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ポイント) 참조;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산업재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제17호(2009. 4) 참조.

〈표7〉 자원생산성혁신 계획 인정기준

구 분	요 건			
		2010년까지 개시	2011년 이후 개시	비고
① 자원생산성의 향상 (기업 또는 사업소 단위) (택1)	에너지 생산성*	4%이상 향상	6%이상 향상	다만 탄소생산성이 악화되지 않을 것
	탄소 생산성	5%이상 향상	7%이상 향상	다만 에너지 생산성이 악화되지 않을 것
	* 에너지 생산성=부가 가치액÷에너지 사용량(원유 환산 kl) < 부가 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감가상각비> ** 탄소 생산성=부가 가치액÷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t-CO2)			
② 재무건전성 제고 (모두 충족)	- 유이자 부채총액 / CF(cash flow) ≤ 10배 - 경상수입 ≥ 경상지출			
③ 고용에 대한 배려 (모두 충족)	- 계획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 종업원 수의 추이에 대한 기재 - 파견(出向)·고용승계(轉籍)·해고의 내역 기재			

동 계획은 공장에 최신 설비를 도입 및 제조 라인을 증설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억제하면서 큰 폭으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회사에 분산되어 있던 생산 설비를 합병을 통해 집약함으로써 노후화 설비의 폐기와 최신설비의 도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에 도입될 수 있다.

동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세제지원(등록면허세 경감, 부동산취득세 경감, 설비 즉시상각), 금융지원(중소기구의 채무보증, 출자 원할화) 및 규제 특례(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 인허가의 의제취득, 기술연구조항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시 검사인 조사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8〉 주된 지원조치

구 분	요 건
세제지원	- 설비투자액의 특별상각 : 2011년 3월까지 100% 즉시상각, 2012년 3월까지 설비 30%, 건물 15% 상각 ※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도입하는 사업소의 자원 생산성을 1년간에 1%이상 향상시키거나 부가 가치액을 원유 환산 500 kl이상 절약한 것과 동일한 정도 향상시키는 설비가 대상 - 등록면허세 경감 - 부동산취득세 경감

구 분	요 건
금융지원	-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 - 자원 생산성 혁신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지정 금융기관의 출자에 대한 손실보전
규제의 특례	-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트럭 운송 사업법상 인허가 취득 특례 - 회사법상 특례(약식 재판, 현물출자시 검사인 조사 면제, 주식병합의 특례 등) - 민법상 특례(사업 양도시 채권자 동의간주)

최근 2009년 6월 24일 샤프 디스플레이 프로덕트 주식회사(이하 ‘샤프 디스플레이’라 한다)가 동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샤프 디스플레이의 모회사인 샤프 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액정 디스플레이 공장을 샤프 디스플레이가 분할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⁷⁾

2.7.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설비 도입 계획²⁸⁾ 도입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설비 도입 계획도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과 마찬가지로 2009년 6월에 새로 신설된 유형이다. 우수한 에너지절감 가전제품 등 사회의 자원 생산성을 향상하는 제품(LCD TV, 에어컨, 냉장고, 조명기기 등)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도 최종 조립 메이커와 공동 신청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다.

동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설비투자액의 즉시상각(2011년 3월까지), 중소기업에 의한 채무보증 등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2009년 6월 24일 엘리파워 주식회사(エリーパワー株式会社)가 동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동사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설치하는 대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자동화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7) 일본 경제산업성, 2009년 6월 24일 보도자료(資源生産性革新計画の認定第1号) 참조

28) 일본에서는 ‘자원제약 대응 제품생산설비 도입계획(資源制約対応製品生産設備導入計画)’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 지원조치

3.1. 세제상 특례²⁹⁾

3.1.1. 투자설비 즉시상각

자원생산성혁신 계획,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설비 도입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되며, 해당 투자설비는 초년도에 전액(100%) 즉시상각할 수 있다. 다만 100% 즉시상각할 수 있는 기한은 2011년 3월 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즉시상각을 통해 과세의 이연과 설비 투자비용의 조기회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의 Cash Flow 개선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2011년 4월~2012년 3월까지의 자원 생산성 혁신 계획의 경우 설비 30%, 건물 15%,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설비 동비 계획의 경우에는 설비 30% 특별상각이 가능하다.

3.1.2. 사업혁신설비의 특별상각

전술한 투자설비 즉시상각과 동일하게 과세의 이연과 설비투자비용의 조기회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업혁신 설비에 대해 특별상각이 인정되고 있다. 특별상각이란 통상의 상각률(보통상한도액)에 특별상각률을 더하여 상각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가속상각 제도이다. 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설비투자 지원)하기 위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일으켜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동 특례의 주목적이다.

동 지원은 사업재구축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경영자원융합 계획, 사업혁신설비 도입 계획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상각률은 아래 <표9>과 같다.

29) 세제상의 조치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9〉 각 계획별 특별상각률

각 계획의 명칭		특별 상각률
✓ 사업재구축 계획 ✓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 사업혁신설비 도입 계획	- 일반 사업혁신설비의 경우	20%
	- 특정 사업혁신설비의 경우	25%
	- 일반/특정 사업혁신설비의 경우	25%

3.1.3. 등록면허세의 경감

회사설립이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나, 합병 및 분할시 부동산 등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자본금액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산업재생법상 인정된 계획에 따라 회사설립 또는 증자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경감된다. 이는 사업양도, 합병, 자회사 설립, 자본의 증가 등을 통해 대폭적인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정된 특례이다. 동 지원은 사업재구축 계획, 기술 활용 사업혁신 계획, 경영자원 융합 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채무면제 계획에 적용되며, 2009년 4월~2010년 3월 사이 적용세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일본 조특법과 세율 비교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	조치의 내용		본칙	산업재생법
1호	회사의 설립, 자본금의 증가		0.7%	0.35%
2호	합병		0.15%	0.1%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의 합병)		0.7%	0.35%
3호	분할		0.15%	0.1%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의 분할)		0.7%	0.35%
4호(매매)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	토지(※)	1.0%	1.6%
		건물	2.0%	1.6%
	선박 소유권의 취득		2.8%	2.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	조치의 내용		본칙	산업재생법
5호	합병시	부동산	0.4%	0.2%
		선박	0.4%	0.3%
	분할시	부동산	0.8%	0.2%
		선박	2.8%	1.2%

※ 다만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 72조에 의해 산업재생법보다도 유리한 세율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동법 80조 1항 4호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예를 들어 100억 엔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3,500만 엔의 비용이 절감되며, 부동산을 분할하면서 100억 엔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6,000만 엔의 비용이 절감된다.

3.1.4.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산업재생법에 의해 인정받은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된다. 동 특례는 산업재생법상 인정기업이 타사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산업재생법상 인정기업이 타사로부터 양수받은 부동산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된다. 동 지원은 사업재구축 계획, 기술 활용 사업혁신 계획, 경영자원 융합 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채무면제 계획에 적용되는데, 2009년~2010년 사이 적용세율은 아래 <표 11>과 같으며, 통상세율에 비해 1/6 정도 경감된 수준이다.

〈표11〉 통상 부동산 취득세와 세율 비교

구분	통상의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	계획인정 후 세율
토지	부동산 가액의 3.0%	부동산 가액의 2.5%
건물	부동산 가액의 4.0%	부동산 가액의 3.3%

예를 들어 100억 엔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7,000만 엔의 비용이 절감되게 된다.

3.1.5.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

세법상 부실자산을 손실로 반영하여 줌으로써 채무면제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채무면제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동지원은 채무면제 계획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6>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부가 기준 자산이 100(시가 20)이고, 부채가 80인 기업에 대해 50의 채무면제가 이루어졌다면 익금이 50이 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손³⁰⁾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면 80(평가손)과 익금 50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경감되게 되는 것이다.

<그림6> 채무면제 개요도



3.2. 회사법상 지원조치

3.2.1. 약식조직 재편성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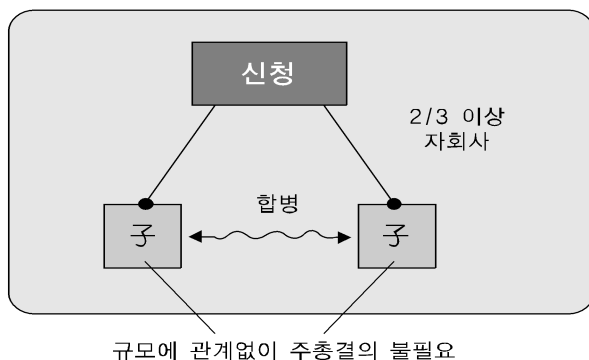
신회사법상 모회사가 9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당해 모회사의 조직재편행위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등 조직재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³¹⁾ 그러나 산업재생법상 승인을 받으면, 신청기업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30) 재산을 재평가한 금액이 장부 가격보다 적어서 생기는 손실을 의미한다.

31) 이에 대한 상세는 권중호 외, 주요국회사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1), 341-343쪽 참조.

있는 자회사가 조직재편을 행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이사회결의만으로 조직재편성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재구축 계획, 기술 활용 사업혁신 계획, 경영자원 융합 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채무면제 계획을 수행하면서 아래 <그림7>과 같이 약식조직재편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림7> 약식조직재편 주주총회 결의면제 예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비용이 절감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기동적인 조직재편성이 가능하다.

3.2.2. 검사인 조사의 면제

신회사법상 현물출자나 재산인수를 행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하는 검사인 등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산업재생법상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현물출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인 등의 조사 없이 이사회 조사만으로 가능하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이유는 산업재생법상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행하는 현물출자 등은 이미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사안이고, 기존기업으로부터의 경영자원 이전이므로 회사채권자 등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설령 출자재산의 과대평가 등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법상 이사의 가액전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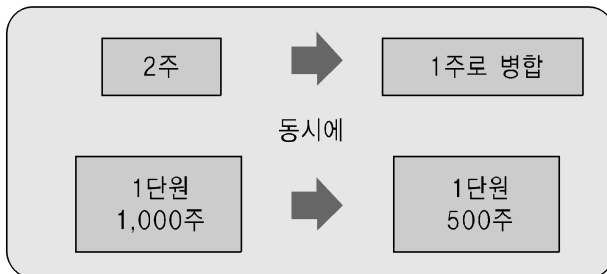
임이 있기 때문에 폐해 우려가 적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동 특례는 사업재구축 계획, 기술 활용 사업혁신 계획, 경영자원 융합 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채무면제 계획에 적용되는데, 산업재생법상 승인기업이 현물출자 등을 행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승인기업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등의 경우 감사인의 조사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2.3. 주식병합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기업이 주식병합을 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산업재생법상 승인을 받아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특례가 인정된다. 다만 주식병합과 동시에 단원주식 수를 감소하여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수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단원주식이란 일본의 특이한 주식법제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 예컨대 10주를 1단원, 100주를 1단원이라는 식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의 주식으로 하여 1단원의 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차등의결권 주식의 효과를 낼 수 있다.³²⁾

〈그림8〉 주식병합시 특례 예시



동 특례는 사업재구축 계획, 기술 활용 사업혁신 계획, 경영자원 융합

32) 권중호, 일본 적대적 M&A 법제의 글로벌화와 시사점(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1), 28쪽 이하 참조.

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채무면제 계획에 적용되며, 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3. 공정거래법상 특례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에 의해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생법에 따라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아래 <표13> ‘신속 심사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30일간이 걸리는 심사를 15일 또는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³⁾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기업결합시 사전상담(통상 30일) → (사전/사후) 신고 → 심사(사전신고시 대기기간 통상 30일)의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사전상담’ 절차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결합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결합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에 대한 대응방침’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재생법상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을 하려는 기업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상담 심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주는 것이며, 이후 사전상담에 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대기(심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³⁴⁾

동 특례는 사업재구축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채무면제 계획에 대해 적용된다.

3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및 산업재생 관련 사안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해설자료(企業・産業再生に係る事案に関する企業結合審査について) 참조.

34) 참고로 우리나라는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신고시 원칙적으로 30일내 심사결과를 통지토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후신고에 대한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권오승, 경제법(법문사, 2008), 176-178쪽 참조; 임영철, 공정거래법(법문사, 2008), 84-86쪽 참조).

〈표12〉 공정거래법과 산업재생법의 기업결합 심사기간 비교

구분	공정거래법상 통상기간	산업재생법상 특례
사전상담 심사기간	30일간	15일간
신고 후 심사(대기)기간	30일간	7일간

〈표13〉 신속심사유형의 개요

- 기준은 기업결합 후의 HHI 및 시장점유율에 기초함
 - (i)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이며, HHI가 2,500 이하
 - (ii) HHI가 1,500 이하
 - (iii) HHI가 1,500 초과 2,500 이하, HHI의 증가분이 250 이하
 - (iv) HHI가 2,500 초과이며, HHI의 증가분이 150 이하
 - (v) 소위 파탄기업 및 파탄부문을 구제하는 경우
-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3.4. 금융상 지원제도

3.4.1.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³⁵⁾에 의한 채무보증

사업재구축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경영자원융합 계획의 실시
 필요한 자금 및 자원생산성혁신 계획, 에너지 절약형 설비 도입 계획
 필요한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채무 및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채에 대해 독립행정법인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중소기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2009년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2009년 개정 이전
 에는 기술활용사업혁신 계획(현재는 폐지되었다)³⁶⁾에 따라 외국자회사

35) 우리나라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비슷한 조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승
 계, 비즈니스 계획의 구체화, 실용화,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36) 김용춘, 일본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6), 20쪽; 기술

가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었다.

보증조건은 용자액 50억 엔 이하, 보증비율은 최대 70%(원칙 50%), 보증료율은 0.3%~0.5%, 보증기간은 운전자금 5년, 설비도입자금 10년 이내이다.

3.4.2. 금융기관 출자에 대한 손실보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 출자를 받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곤란한 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2009년 6월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제도이다. 이는 기업에 대한 출자를 원활화하는 관점에서 지정 금융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일부 보전하는 제도이다. 즉 투자대상기업의 도산 등으로 출자원본이 훼손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일본 정책투자은행 등)이 입은 손실의 일부(약 50%~80%)를 정책금융공고가 보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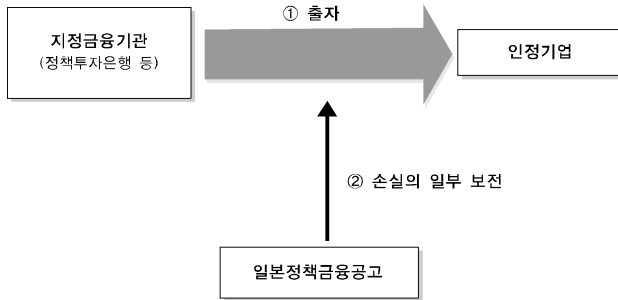
동 지원책은 막대한 자금 지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업에 대한 출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지정금융기관이 산업재생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일정기간(3년) 후에 당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이 예상되고, 매출액의 감소(4분기에 전년대비 20% 이상), 자기자본의 감소(전년대비 25% 이상), 국내고용 5,000명 이상(연결 베이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 동 지원책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전이 인정되는 자금은 지정금융기관이 자기자금으로 출자한 것 중 2조 엔 이내의 범위로 한정된다.³⁷⁾

활용 사업혁신 계획이란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이나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혁신적인 사업을 행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7) 일본 경제산업성, 개정 산업재생법 지원제도 설명자료(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産活法) について(2009. 6)) 참조;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일반기업 공적자금 투입제도 신설”, 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제5호(2009. 1)

또한 동 지원책은 사업재구축 계획, 경영자원 재활용 계획, 경영자원 융합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에 대해 적용된다.

〈그림9〉 금융기관 출자에 대한 손실보전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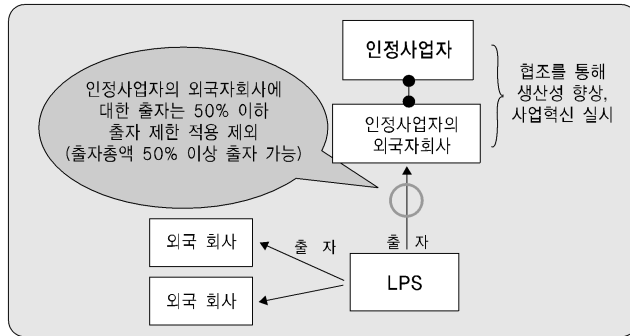


3.4.3. 해외자회사 자금조달 원활화(LPS법 특례)

통상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LPS)이 외국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LPS법상 당해 조합 출자총액의 50%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국내사업자는 외국자회사의 활용을 통해 경영자원 획득 및 해외 시장개척 등을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국내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재구축 계획의 승인을 받은 일본 국내사업자가 외국 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출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LPS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50%이상의 출자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요도는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10〉 LPS법 특례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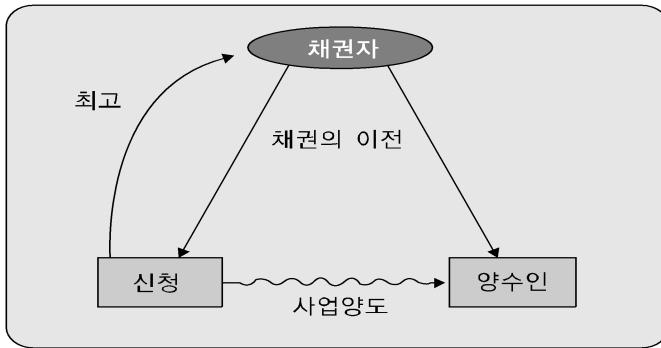
3.5. 민법상 특례 :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간주

통상 기업이 사업양도에 의해 채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부터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채무는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연대채무)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³⁸⁾

그러나 산업재생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지(최고)하고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사업양도인은 이를 통해 완전한 채무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별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적·금전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 특례는 사업재구축 계획, 기술 활용 사업혁신 계획, 경영자원융합 계획,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채무면제 계획에 대해 적용된다.

38)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09. 1), 1194-1207쪽 참조.

〈그림11〉 민법상 특례 개요도



3.6. 물류관계법의 특례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즉 물류 효율화에 의해 자원 생산성의 향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즉 자원 생산성 혁신 계획을 실행하면서 화물 이용 운송 사업(제1종·제2종) 및 일반화물 운송 사업의 인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계획의 승인에 따라 각종 물류관계법상 인허가 등이 자동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물론 동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의 승인 신청시 물류관계법상 인허가,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이란 화주와의 운송 계약에 의해 화물의 집하로부터 배송까지 일관해서 처리하는 수송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집하와 배달을 함께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제1종(등록이 필요), 집하와 배달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는 제2종(허가가 필요)이라 한다.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허가가 필요)을 말한다.

〈표14〉 간주 취득이 가능한 물류 관계의 인허가 등

제1종 화물이용 운송사업	등록, 변경 등록, 변경의 신고, 지위 승계의 신고, 폐지의 신고
제2종 화물이용 운송사업	제2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의 허가, 사업 계획·집배 사업 계획의 변경의 인가,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 양도·양수의 인가, 합병·분할의 인가, 휴업·폐지의 신고, 외국인 국제 제2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의 허가, 변경의 인가, 사업 계획의 변경의 신고, 폐지의 신고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업 계획의 변경의 인가,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 양도·양수의 인가, 합병·분할의 인가, 휴지·폐지의 신고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산업재생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의 개념을 매우 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 인수,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공정 최적화 등 일련의 구조개혁 활동을 구조조정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산업재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산업재생법은 사업재구축 계획과 같은 유형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그 유형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구조개혁 수용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상술한 산업재생법의 주요 적용대상 및 인정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15>, 표<16>과 같다.

〈표15〉 산업재생법의 적용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재구축 계획	그룹내 구조조정 등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경영자원 재할용 계획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승계)하는 경우
채무면제 계획	상기 2계획에 더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자원 융합 계획	2이상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통합하여 특정사업에 집중하는 경우
사업혁신설비 도입계획	사업혁신설비(국내 최초도입 설비, 신기술 설비 등)를 도입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자원생산성 혁신 계획	기업 또는 영업장의 에너지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활동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설비 도입 계획	에너지절감 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설비투자 하는 경우

〈표16〉 산업재생법상 인정요건

구분	요건	사업 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경영자원 융합	사업혁신 설비도입	자원 생산성 혁신	에너지 절약형 설비도입
생산성 향상 (택1)	ROE 또는 ROA의 향상	○ (ROE 2%p)	○ (ROA 2%p)	○ (ROA 3%p)			
	유형고정자산회전율 상승	○ (5%)	○ (5%)	○ (10%)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상승	○ (6%)	○ (6%)	○ (12%)			
	자원생산성 향상					○ (※4)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제조						○ (※5)
사업 구조 변경 (택1)	사업개시, 확대, 능률의 향상 등 (합병, 분할, 사업양도, 회사 설립, 자본 증가 등)	○	○ (합병, 사업양도 등)	○ (2이상의 사업자와 관련)		○	
	사업의 축소, 폐지 등 (설비철거, 폐기, 사업양도 등)	○				○	
사업 혁신 (택1)	사업혁신(※1)	○ (※2)	○ (※2)	○ (※3)			
	사업혁신설비				○		
재무 건전성 (모두 충족)	유이자 부채 / 현금흐름 ≤ 10배	○	○	○		○	
	경상수입 ≥ 경상지출	○	○	○		○	
고용	고용예의 배려	○	○	○		○	

※1: 등록면허세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

- ① 신상품, 신서비스 국내 매출액 비중 ≥ 1%, ② 제조원가·판매비 절감율 ≥ 5%,

③ 매출액 신장률 $\geq$ 업계평균 매상 신장률 + 5%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

① 신상품·서비스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 $\geq$ 1%, ② 신상품·서비스의 매출액 신장률 $\geq$ 업계 평균치+5%

※4: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단 다른 지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

① 에너지 생산성 $\geq$ 4%, ② 탄소 생산성 $\geq$ 5%, (2011년 이후에는 ① $\geq$ 6%, ② $\geq$ 7%)

※5: 해당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제품 또는 전용 부품 등을 초년도 50%이상, 2년째 이후는 100%생산

한편 산업재생법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계획별로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사실 구조조정의 성패는 해당 사업 부분의 사업성이라기보다 구조조정의 신속성,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 산업재생법은 구조조정의 시간단축을 위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결의 면제, 감사인의 조사 면제 등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설비투자 자금 등에 대한 채무보증, 금융기관의 출자에 대한 손실보전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경감, 설비투자자금의 즉시상각 등의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지원책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산업재생법상 지원조치

구분	요건	사업 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경영자원 융합	사업혁신 설비도입	자원 생산성 혁신	에너지 절약형 설비도입
세제	등록·면허세의 경감 (2.8%→1.2% 등)	○	○	○		○	
	설비 특별상각	20~25%	20~25%	25%	20~25%	100%	100%
	채무면제시 자산평가손의 손급산입	○	○				
	사업양도시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3%→2.5% 등)	○	○	○		○	

구분	요건	사업 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경영자원 융합	사업혁신 설비도입	자원 생산성 혁신	에너지 절약형 설비도입
금융	중소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	○	○		○	○
	금융기관 출자에 대한 손실보전	○	○	○		○	
	해외자회사 자금조달 원활화	○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에 의한 설비 투자시 주식의 인수등	○	○	○	○	○	○
공정 거래법	기업결합심사의 신속화 (30일 → 7일 등)	○	○				
상법 (회사법)	합병시 자회사 주총 결의 면제 (자회사의 의결권 2/3 이상)	○	○	○		○	
	현물출자시 검사인 조사 면제	○	○	○		○	
	주식 병합시 주총결의 면제	○	○	○		○	
민법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 간주	○	○	○		○	
기타	물류관계법상 인허가 등 특례					○	

Ⅲ. 산업재생법 특례의 일반화(신회사법에의 반영)

1. 신회사법의 제정과 산업재생법의 개정

일본은 ‘회사법제의 현대화’라는 기치아래 회사법제를 상법에서 분리하여 2005년 신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종래 각 법률에 산재해 있던 회사법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의 상법 제2편(회사편)을

상법으로부터 떼어내고, 상법특례법 및 유한회사법 등과 합쳐 단행법화한 것이다.

신회사법은 단지 상법으로부터 회사법제를 분리, 독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본 상법상 여러 제도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특히 ‘규제완화’와 ‘정관자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³⁹⁾

이에 따라 산업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이조직재편의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의 특례가 신회사법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영된 특례는 2007년 산업재생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표18〉 신회사법에 반영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신주 발행 대신 금전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 교부 허용
간이조직재편 ⁴⁰⁾ 의 요건 완화	구상법상 존속기업의 합병 대가가 순자산액의 5% 이하이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합병할 수 있었으나 신회사법은 20%로 요건 완화
배당 대가의 유연화	배당으로 금전, 당해회사 주식 대신 다른 회사 주식이나 사채, 현물 등 기타 재산 지급 가능
자본금 감소시 주총면제	자본금 감소와 동시에 증자가 있는 경우 주총결의 면제
회사분할시 사채권자에 대한 최고(통지) 특례	사채관리회사에 대해 최고하는 것으로 무기명사채 등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관보 공고 등) 면제
사후설립시 감사인 조사 면제	사후설립(회사성립 직후 재산취득 등)의 경우에도 감사인의 재산 조사 면제

이처럼 산업재생법상의 특례가 일반법인 회사법에 반영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산업재생법상 규정은 제한적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특례로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보고, 그 사회적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 규정에 대해 일반 규정화하여 기업 전체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39) 권중호 외, 주요국회사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1), 245쪽 참조.

40) 우리나라의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에 해당한다.

이처럼 산업재생법은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pilot test)적 법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같은 성격의 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좋은 입법적 방법론(tool)으로서 참조할 가치가 충분하다.

〈표19〉 우리나라 상법과의 비교

구분	구 일본상법	신회사법	우리나라 상법
합병 대가의 유연화	신주 교부	금전, 사채 등 기타 재산 교부 가능	신주 교부
간이조직재편의 요건 완화	순자산액의 5%	순자산액의 20%	발행주식 총 수의 5%
배당 대가의 유연화	금전 또는 당해 회사주식	금전 또는 기타재산	금전 또는 당해 회사주식
자본금 감소시 주총면제	주총 특별결의	주총결의 불요 (감자와 동시에 증자시)	주총 특별결의
분할시 사채권자에 최고	공고 또는 채권자에게 최고	사채관리회사에 최고	공고 또는 채권자에게 최고
사후설립시 검사인 조사 면제	검사인 조사 대상	검사인 조사 불필요	검사인 조사 불필요 (다만 사후설립 요건 엄격)

2. 신회사법에의 반영내용

2.1.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구 일본상법은 우리나라 현행 상법과 마찬가지로 합병 등의 경우에 그 대가로서 신주 발행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재편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완전자회사 또는 폐쇄회사의 합병 등 자사의 주식을 대가로서 하지 않는 합병 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생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산업재생법은 동법상 승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에 대신하여 금전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특례는 합병 등 조직재편의 원활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인정되자, 2005년 신회사법 제정시 특례가 아닌 일반규정으로 서 신회사법에 포섭⁴¹⁾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산업재생법 개정시 동 특례는 삭제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은 구 일본상법과 마찬가지로 합병의 대가로 신주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2.2. 간이조직재편 행위의 요건 완화

합병 등 조직재편행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간이조직재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면제된다. 여기서 간이조직재편행위라 함은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지불하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 구 일본상법은 간이조직재편행위의 요건으로 합병대가가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 일본상법상의 요건이 너무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구산업재생법은 기동성 있는 조직재편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 일본상법상의 요건을 5%에서 20%로 완화하였으며, 2005년에는 신회사법에서 동 특례를 받아들였다⁴²⁾.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제도(일본의 간이합병제도에 해당)를 두고 있으나, 구 일본상법과 유사하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5%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⁴³⁾

41) 일본 신회사법 제749조.

42) 일본 신회사법 제467조, 제468조.

43) 정찬형, 상법강의(上)(박영사, 2008), 1102-1103쪽 참조.

2.3. 배당대가의 유연화

구 일본상법상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 또는 당해 회사 주식배당만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내에서 모회사를 형제회사 관계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등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교부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회사를 원활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 산업재생법에서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신회사법의 제정으로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의 대가로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자회사 주식을 포함함)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동 특례는 2007년 산업재생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참고로 기타의 재산, 즉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을 분배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한 주주측에서 현물을 손쉽게 환금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신회사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⁴⁾ 다만 대회사(회계감사인설치회사)⁴⁵⁾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⁴⁶⁾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은 구일본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대가로 금전 또는 당해회사 주식만 인정하고 있다.⁴⁷⁾

2.4. 자본금(법정준비금) 감소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구 일본상법상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주식발행과 동시에 자본금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부실기업의 재건)의 효과⁴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

44) 일본 신회사법 제454조.

45) 대회사는 최종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에 자본금으로 계상된 액이 5억 엔 이상이거나 부채의 부에 계상된 액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46) 일본 신회사법 제450조.

47) 임재연, 자본시장법(박영사, 2010), 605-610쪽 참조.

게 지원하기 위해 구 산업재생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법상 자본금 감소와 동시에 신주발행 등 증자를 통해 전체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게 됨⁴⁹⁾에 따라 구산업재생법상 특례규정 삭제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으나⁵⁰⁾, 상법에는 이와 같은 특례가 없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2.5. 회사분할시 사채권자에 대한 최고의 특례

구 일본상법은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로써 관보에 공고를 하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최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고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 분할한 회사는 각각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무기명사채 및 사채대체제도를 이용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채권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 산업재생법에서는 인정계획에 따라 행하는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하여 최고를 하면 무기명사채 등의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재생법상의 특례 규정은 신회사법 제정시 모두 수용되었

48) 이를 독일에서는 Sanierung(자본감소와 자본증가를 결합한 재무구조 개선수단)이라고 함. 자본결손이 심하여 주당 순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면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자본감소를 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액면가 이상으로 만드는 동시에 신주발행을 하면 종전의 자본 규모를 회복하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실기업의 재건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이철송, 회사법강의(박영사, 2007), 730쪽 참조).

49) 일본 신회사법 제447조.

5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으며, 이에 따라 2007년 산업재생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은 구 일본상법과 마찬가지로 공고 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최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 특례 규정이 없다.

2.6. 사후설립시 검사인 조사(취득재산 가격검사)의 면제

사후설립이란 회사의 설립 전부터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 일본상법상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회사법의 제정으로 주식회사의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한 재산을 그 사업을 위해 계속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졌다.⁵¹⁾ 다만 신회사법상 사후설립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는 간이사업양수와 같이 대가로 교부하는 재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당해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의 20% 이내인 경우(간이사후설립)이고, 둘째는 신설합병, 신설분할 및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후설립에 대한 규제(주주총회 결의)는 적용되지 않는다.⁵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후설립시 검사인의 조사는 불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 사후설립은 취득재산이 자본의 5% 이상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나, 일본은 취득재산이 순자산의 20% 이상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후설립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Ⅳ.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산업재생법을 통해 우량기업을

51) 일본 신회사법 제467조.

52) 권종호 외, 주요국회사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1), 330쪽 참조.

포함한 상시적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장기 불황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³⁾.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은 산업재생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08년 3월에서 2016년 3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산업재생법과 같은 구조조정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실기업의 회생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설비투자, 과잉설비의 폐기 등 우량기업의 경영전략도 상시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금속, 야프, 산요 등 일본의 우량 기업들도 산업재생법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례로 일본 철강업계 3~4위권인 스미토모 금속은 산업재생법상 구조조정을 통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133%나 향상시켰다.

〈표20〉 산업재생법 적용 사례 및 효과

회사명	승인시기	추진 내용 및 효과
스미토모 금속	2003.5.30	•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증자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금융지원,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 지원 • 제조원가 6% 절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133% 향상
신일철 화학	2003.7.22	• 신일본제철의 완전자회사화, 증자, 회사분할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등 지원 • 신제품 매출액 비중 7%,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78.6% 향상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금속	2003.9.26	• 스텐레스 사업을 분할하여 공동으로 신회사 설립 • 등록면허세 경감 등 지원 • ROA 16.0%p 향상
삼협알루미늄 공업	2003.11.25	•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일본정책은행의 융자, 검사인 조사 면제, 채권자 통지 간소화 등 지원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11% 향상

53) 권종호, “일본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2008. 8), 81쪽; LG주간경제, 앞의 책, 9-10쪽 참조.

회사명	승인시기	추진 내용 및 효과
코닥 재팬 디지털 프로덕트	2004.1.22	• 공개매수, 증자, 영업양수, 합병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합병대가 현금지급, 검사인 조사 면제, 합병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채권자 통지 간소화 등 지원 • 판매비 24.8% 절감, ROE 9.0%p 향상
후지유업	2004.2.9	•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감자 및 증자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 자본감소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 지원 • 판매비 5.98% 절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20.6% 향상
산요전기	2006.3.10	• 산요반도체(주) 신설, 증자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등 지원 • 신제품 매출액 비중 3.3%, 유형고정자산회전율 59.8% 향상
닛산 자동차	2006.3.29	• 자동차 판매 관련 52개사로 분할, 증자 및 감자 등 추진 • 등록면허세 경감 등 지원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125% 향상, 유이자부채/CF가 2.8배에 이름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 자율적이 아닌 간헐적이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상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반면,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문제 일소형 간헐적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시 55개 퇴출기업의 선정이라던가, 최근의 9개 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2009년 6월 3일), 11개 대기업 퇴출 대상 선정(2009년 6월 11일) 등이 그렇다.⁵⁴⁾ 구조조정 관련된 주요 법령도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 표21 〉 구조조정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유도 • 2010.12.31까지 한시 적용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법	•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 • CRV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의 일종으로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제한

54)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2009. 9) 참조.

법률명	주요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부실기업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법정관리)

그러다 보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 채권 금융기관 이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대상기업의 불만 등 부작용 초래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조조정 지연, 헐값 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래수익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등 획일적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우려로 퇴출 대상 기업을 방치하는 사례, 사업매각 시한이 촉박하여 헐값매각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한편 기업회생을 위한 지원방안도 운영되고 있지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⁵⁵⁾ 기업구조조정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본의 산업재생법의 사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구조조정을 부실기업 퇴출 또는 회생개념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일반 특히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전반의 체질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과 기업간 구조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이해상충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불식시켜 사회적 혼란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산업재생법의 효과 검증됨에 따라 M&A 같은 사업구조변경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기술개발, 에너지 절감 활동 등 모든 경영혁신 활동에 대해 동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55) 대한상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과제 건의(2009. 1), 2쪽 참조.

한다.

첫째, 구조조정의 대상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물론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대수술’ 중심보다 건강한 기업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예방주사’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원된 자금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사용되기보다 사업매각 등을 통한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이 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방향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필요성 또한 해당 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추진만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의 과실(果實)을 얻게 되는데 왜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느냐,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모든 구조조정 기업에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만 인센티

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는, 일본 산업재생법의 정신에서 보듯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국가 발전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셋째,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지원은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 구조조정 성공의 성패는 달리 구조조정 기업의 사업성이나 수익성보다 얼마나 빨리 진행시키고, 얼마나 저렴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를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기업 M&A 당시에는 관련 업종이 호황이었으나, 진행과정에서 상황이 변화하여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가 경영난에 휩싸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 등의 특례와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저리 금융지원, 세제감면 등의 특례를 한꺼번에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 미즈이 광산은 산업재생법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평가 손의 손금납입 인정, 자본감소시 주주총회 결의면제, 등록면허세 감감, 현물출자시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가격조사 면제, 합병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은 바가 있다.

넷째, 산업재생법을 규제완화의 입법적 방법론, 즉 시범적(pilot test) 시스템으로써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생법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시범운영(pilot test)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합병 대가의 유연화, 간이조직재편의 요건 완화 등 상당수 규정이 일본 회사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제도가 가지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완화 입법 추진시 기업의 상황, 각 제도들에 상존하는 장단점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입법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특정 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도입하여 시범운영한 후 규제완화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녹색성장 등 국가 아젠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해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 산업재생법은 경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해 국가 아젠다의 해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9년 산업재생법 제정시 과잉공급구조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간 구조조정을 유도하였으며, 2003년에는 구조조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2007년에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최근(2009년 6월)에는 국제 원자재 값 급등 및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을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일본 산업재생법과 같은 방안(tool)은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이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정부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미흡⁵⁶⁾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적 아젠다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법안이 녹색성장 등 육성방안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 산업재생법과 같은 법률, 가칭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빠르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

56)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 6. 5) 참조.

로 보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같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가 2014년이나 되어야 2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⁵⁷⁾이나, 당분간 경영환경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⁵⁸⁾ 등과 같이 부정적인 견해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글로벌 경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의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다가 부실기업이 되어야만 국가가 나서서 시스템보다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상시적으로 총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력 전쟁이 군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경제 전쟁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2009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14일)

주제어 : 산업재생법, 사업재편, 구조조정, M&A, 기업결합, 영업양수도, 설비투자

57)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9) 참조.

58) 전경련이 20대 그룹 기획 재무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업환경 및 경영전략’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의견이 15%에 불과한 등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투데이, 2009. 6. 1).

참고문헌

1. 단행본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8.

권종호 외, 주요국 회사법, 전경련, 2009.

권종호, 일본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8.

_____, 일본 적대적 M&A법제의 글로벌화와 시사점, 전경련, 2009.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2009.

김용춘, 일본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 전경련, 2009.

녹색성장 위원회, 녹색성장 국가계획 5개년 계획, 2009.

대한상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과제 건의, 2009.

유관영, 일본의 기업구조개혁 지원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1999.

이지평, 일본기업의 기업투자활성화 대책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4.

_____,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배운다, LG경제연구원, 200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7.

임영철, 공정거래법, 법문사, 2008.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정성춘 외,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한국경제연구원,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시사점, 2000.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산업재생법 개정안 해설자료(我が国における産業活動の革新等を図るための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

- 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2009. 2.
- _____, 일본 산업재생법 개정안 주요사항(我が国における産業活動の革新等を図るための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ポイント), 2009. 2.
- _____, 산업 활력 재생특별 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요(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 _____, 2007년 개정 산업재생법 핸드북(平成19年改正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認定ハンドブック)
- _____, 2007년 개정 산업재생법상 지원조치(平成19年度改正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の支援措置)
- _____, 2003년 개정전 인정사업재구축 계획 일람(平成15年改正前の認定事業再構築計画一覧)
- _____, 2003년 개정후 인정계획 일람(平成15年改正後の認定計画一覧)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산업재생 관련 기업결합 심사 해설(企業・産業再生に係る事案に関する企業結合審査について), 2009. 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4.

2. 논문

-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산업재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제17호, 2009.
- _____, “일본정부의 일반기업 공적자금 투입제도 신설”, 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제5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Yong-Choon Kim*

“Act on Special Measures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ASMIR’)” was legislated in Japan in 1999,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1990s’ long recession called ‘lost 10 years’.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improve a industrial constitution and to strengthen a national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active and voluntary revitalization(including M&A, establishment of company, spin off, business transfer, equipment investment, R&D investment, etc.) of companies with the government offering companies various incentives. The major feature of this ac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MIR is applied to not only insolvent enterprise but also a normal enterprise. Second, various incentives are offered to companies in the method of a package(so-called ‘one stop service’). For example, the corporation approved by government on ASMIR may be given the benefits of tax cut, financial support, simplification of procedure, etc. at once. Third, an effect and side effect of the various exceptions may be tested by applying to a particular corporation selectively(so-called ‘Pilot Test’). Fourth, this

* Assistant Manager, Corporate Policy Team of Industrial Research Division,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ct may be a new solution to achieve the national agenda, for example, resource saving, low carbon, green growth.

ASMIR as above has been estimated to contribute to overcome 1990s' long recession in Japan. But it seems that there is no act like ASMIR in Republic of Korea. For this reason, I made an attempt to seek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 to overcome a global financial crisis early and to achieve a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by researching concrete cases and contents of Japanese ASMIR in this thesis.

Key Words : Act on Special Measures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M&A, Establishment of company, Spin off, Business transfer, Equipment investment.